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예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1. 4. 2.

예천군의회 의장



1. 제정이유

-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족이 군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함.

나. 예우 및 홍보(안 제5조)

- 군 주요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 예천군 포상조례에 따른 포상

○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예천군 포상조례」 제2조, 「병역법」 제80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 제20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다. 예산조치 : 추후반영

라. 규제심사 : 해당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반영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예천군의회 (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 (☎054- 650- 6407, FAX 054- 650- 6409)
- 전자우편(이메일) : syyh2000@korea.kr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2. “3대 가족”이란 조부와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관리·위탁한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예천군 포상 조례】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출향인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병역법】

제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① 병무행정관서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보처리·통신시설을 보유하는 기관의 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제2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2. “부상금”이란 병역명문가 심사위원회에서 표창대상으로 선정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표창과 함께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3. “병역명문가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4. “병역명문가 대표“란 별지 제1호서식의 병역명문가 신청서에 가문대표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

제20조(병역명문가 우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명문가 가족을 기념식 등 행사에 초청하거나 병무행정 관련 정책자문위원 등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의 장에게 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이용료 할인이나 우대 등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